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전예비군 편성 법률적 근거 마련 등〉

■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00호)

2025. 2.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육군특수전사령부 복무자의 특전예비군 편성	4
2. 특전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성호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19.
3. 회부연월일 : 2024. 1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전예비군은 특전사 출신 예비군(7년차부터 8년차까지) 중에서 희망하여 선발된 사람으로 구성된 예비군으로서 「예비군법 시행령」 및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편성 근거를 두고 있음.

현대전이 총력전의 양상을 보임에 따라 유사시에 비정규전이나 후방작전 등에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비전력을 보유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24. 7 국방정책자료집 및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병력구조가 상비병력 14%(50만여 명), 예비병력 86%(310만여 명)로 편성되어 있어 수준 높은 예비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방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임.

그러나 특전예비군은 2011년에 창설된 이후 그 규모가 2014년에 1,200여 명에서 2024년 현재는 770여 명으로 축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특전예비군의 편성 및 육성·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점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전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특전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특전예비군을 안정적으로 확충·육성하도록 하여 특전예비전력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현재 ① 「예비군법시행령」에 규정된 특전예비군부대 편성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특전예비군부대에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②특전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안 제14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① (생략) <u><신설></u>	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지역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특전예비군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특전예비군에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예비군의 설치 및 편성의 기준과 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군----- -----.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④ 제3항에 따른 예비군 편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 ----- -----.
⑤ ~ ⑨ (생략)	⑥ ~ ⑩ (현행 제5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생략)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구역의 특전예비군을 우선적으로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특전예비군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③ (생략)	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1. 육군특수전사령부 복무자의 특전예비군 편성

□ 개정안은 현재 「예비군법시행령」¹⁾에 규정된 특전예비군부대 편성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동시에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특전예비군에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예비군법시행령」 제5조(예비군의 편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지역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비군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1. 특전예비군지역대: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
2. 특전예비군중대·기동대: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 단위
3. 타격대: 동·읍·면 단위

- 현재 특전예비군은 실무적²⁾으로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복무 후 전역한 7년차 이상의 예비역 중 특전예비군으로 복무를 지원³⁾하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음.

<특전예비군 편성 현황>

구 분	계	지작사	2작사	수방사
지역대	4개	-	4개	-
시·군·구 단위 중대	68개	18개	47개	3개
편성인원 (명)	589명	143명	407명	39명

* 자료 : 국방부

- 개정안은 2011년 특전예비군 창설 이후 그 규모가 2014년에 1,200여 명에 달하였으나 2024년 589여 명으로 축소⁴⁾되었는데, 그 원인으로 특전예비군의 편성 및 육성·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점에 기인한다는 판단하에,

이를 개선하고자 특전예비군 편성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육군 특수전사령부 복무자 중 일부의 인원을 특전예비군으로의 우선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조치로 특전예비군 병력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2) 「예비군시행령」에 따른 특전예비군을 육군특수전사령부 복무자로 편성하도록 하는 현행 법령 규정은 없음.

3)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지원방법 및 처리절차) ① 예비군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군편입지원서(「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를 지역 또는 직장예비군 지휘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귀화자는 국적취득사실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연도별 특전예비군 편성 인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특전예비군 인원	532명	532명	614명	630명	589명

□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전예비군 제도는 예비군 1년~6년차 까지 병력동원훈련, 기본·작계훈련 등 「병역법」 등에 따른 소정의 예비군 군사훈련을 모두 이수 후 예비군 7년차부터 추가적으로 작계훈련(연 6시간), 특전여단 입영훈련(연 1박2일)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⁵⁾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상 예비군훈련 대상 및 시간 현황>

구 분			계	동원예비군훈련		지역예비군훈련		예비 시간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신규 전역자(간부/병)			160 시간					160시간
병	1~4 년차	동원지정		2박3일				132시간
		동원미지정			4일 또는 2박3일			128시간 (132시간)
	5~6 년차	동원미지정				8시간	12시간	140시간
	7~8년차			미이수훈련				160시간
간 부	1~6 년차	동원지정		2박3일				132시간
		동원미지정			2박3일			132시간
	7년차~연령정년			미이수훈련				160시간

이는 현재 특전예비군 편성이 지원자로 구성된 관계로 추가적인 훈련 의무 부담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과 같이 육군특수전사령부 복무자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특전예비군으로 편성할 경우,

5)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6조 (기타훈련) 마. 특전예비군 훈련

- 1) 특전예비군부대 교육훈련은 수임군부대장 통제 하 작계훈련(6시간)을 실시하고, 최기 특전여단에 1박 2일 입영하여(16시간) 훈련을 실시한다.
- 2)작계훈련 불참자는 제18조 제3항 나목에 의해 3차 훈련 무단불참자 고발조치로 처리한다.
- 3)입영훈련은 1차 훈련까지 실시하고 2차 및 3차 훈련은 수임군부대장이 부대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학급을 편성하여 통제하며, 3차 훈련 무단불참자에 대해서는 편성에서 제외한다.

예비군 동원 기간, 훈련 횟수 등 특전예비군의 병역 의무 부담 비중이 「예비군법」에 따른 여타의 지역예비군, 직장예비군이 부담하는 병역 의무 부담 수준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고려한 입법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방위원회 법률안소위원회(2024.11.26.)에서 특전예비군의 편성에 관하여 동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2592호,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되어 논의되었으나 특전예비군을 의무적 방식으로 편성할 경우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의견⁶⁾이 제시되어, 법률안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국방부는 특전예비군의 설치 및 편성에 관한 내용을 상위 규정인 법률에 명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나, 육군특수전사령부 전역자 중 일부를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전예비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 특전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개정안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구역의 특전예비군을 우선적으로 육성·지원하여야 하고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6) 한기호 위원 발언 요지 : 특전예비군 편성을 의무화하면 사실상 문제가 있음.
임종득 위원 발언 요지 : 특전예비군 편성은 자원에 의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이는 특전예비군 양성을 내실화함으로써 예비전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입법 조치로 이해됨.

- 다만, 국방위원회 법률안소위원회(2024.11.26.)에서 특전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동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예비군법」 일부 개정법률안(제2202592호,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되어 논의되었으나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이 더욱 긴급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전예비군의 우선적 육성·지원 규정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⁷⁾과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 특전예비군의 ‘우선적’ 육성·지원 규정을 ‘적극적’ 육성·지원 규정으로 수정하는 경우 법률 개정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⁸⁾이 제시되어, 법률안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국방부는 특전예비군에 대해 ‘우선적으로’ 육성·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예비군 육성의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 제14조의 3제2항의 ‘우선적으로 육성·지원’ 규정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7) 임종득 위원 발언

8) 한기호 위원 발언

문 의 처
02)6788-5307